

2021 주요 업무보고

2021. 11. 9.

재 무 국

I. 일반 현황

조직 · 인력

6과 34팀 241명/226명 (정/현원)



기능

| 과 별 | 주 요 업 무 |
|-----------|---|
| 재 무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금관리, 세입·세출 결산, 지출·계약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
| 자 산 관 리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재산 관리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
| 계 약 심 사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
| 세 제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
| 세 무 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
| 38세금징수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백만 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최종) | 증 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계 | 23,744,941 | 22,087,219 | 1,657,722 | 7.5 |
| 시 세 | 20,023,706 | 19,552,425 | 471,281 | 2.4 |
| 세 외 수 입 | 253,930 | 228,657 | 25,273 | 11.1 |
| 보 조 금 | 2,029 | 1,704 | 325 | 19.1 |
| 보 전 수 입 등 | 3,465,276 | 2,304,433 | 1,160,843 | 50.4 |

〈세출예산〉

(단위: 백만 원, %)

| 구 분 | 2021년 | 2020년(최종) | 증 감 | |
|------------------|-----------|-----------|---------|--------|
| | | | 금 액 | 비 율 |
| 계 | 3,129,056 | 2,885,689 | 243,367 | 8.4 |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801,642 | 783,271 | 18,371 | 2.3 |
| 기 본 경 비 | 2,226 | 2,212 | 14 | 0.6 |
| 재 무 활 동 | 3 | 8 | △5 | △62.5 |
| 사 업 비 | 31,077 | 24,127 | 6,950 | 28.8 |
|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 1,759 | 1,919 | △160 | △8.3 |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8,935 | 2,308 | 6,627 | 287.1 |
|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 42 | 54 | △12 | △22.2 |
|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 2,243 | 2,643 | △400 | △15.1 |
| 시세입 목표달성 | 10,913 | 9,807 | 1,106 | 11.3 |
| 조세정의 실현 | 7,185 | 7,396 | △211 | △2.9 |
| 타 기 관 지 원 | 2,294,108 | 2,076,071 | 218,037 | 10.5% |
| 자치구 교부금(재정보전금) | 1,781,630 | 1,607,945 | 173,685 | 10.8% |
| 자치구 교부금(시세징수교부금) | 510,458 | 468,126 | 42,332 | 9.0% |
| 출연금 | 2,020 | - | 2,020 | 100.0% |

재 산 현 황 (市)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 구 분 | 토 지 | | 건 물 | |
|------|--------|------------------|--------|-----------------|
| | 필 지 | 면 적(천㎡) | 동 수 | 면 적(천㎡) |
| 계 | 58,048 | 105,287 (100.0%) | 63,989 | 12,774 (100.0%) |
| 행정재산 | 55,898 | 103,913 (98.7%) | 7,035 | 6,006 (47.0%) |
| 일반재산 | 2,150 | 1,374 (1.3%) | 56,954 | 6,768 (53.0%) |

II . 정책목표 및 방향

목표

시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재정관리 구현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2.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징수 목표액 달성
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3. 생계형 서민채납자 복지연계 지원
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재산가치 증대

정책
과제

실천
과제

III.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튼튼한 재정기반 마련

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1. 안정적 세입 확보로 든든한 재정기반 마련

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1-2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징수 목표액 달성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1-5 시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1-1

세입목표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누락 세원발굴 등을 통한 세입징수로 '21년 市세입 목표달성 추진

□ '21년 시세입 목표: 20조 237억원(전년대비 4,713억원 ↑, 2.4% ↑)

○ '21. 8월 말 17조 3,253억원(진도율 86.5%) 달성

(단위 : 억원)

| 구 분 | '21년 예산 (A) | 8월 실적(누계) | | 전년동기 실적대비 | | |
|------------|----------------|----------------|--------------|------------------|----------------|-----------------|
| | | 징수액 (B) | 진도율 (B/A) | '20.8월 징수 (C) | 증감액 (D=B-C) | 증감율(%) (D/C) |
| 시 세 | 200,237 | 173,253 | 86.5% | 147,531 | 25,722 | 17.4% |
| 취 득 세 | 50,589 | 55,383 | 109.5% | 44,800 | 10,583 | 23.6% |
| 지방소득세 | 51,964 | 58,522 | 112.6% | 48,538 | 9,984 | 20.6% |
| 지방소비세 | 18,243 | 15,550 | 85.2% | 13,228 | 2,322 | 17.6% |
| 재산세 | 33,945 | 12,091 | 35.6% | 10,586 | 1,505 | 0.0% |
| 기타세목 | 45,496 | 31,707 | 69.7% | 30,379 | 1,328 | 4.4% |

□ 추진 내용

○ 시·구 합동 징수활동 및 자치구별 목표관리제 강화

- '21년도 세입징수 종합대책 계획 수립 및 시·구 합동 영상회의(3월)
- 세목별·월별 세입실적 분석 및 자치구 징수율 제고를 위한 분기별 비대면 점검 강화

○ 시·구 협력을 통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로 세원발굴 강화

- 탈루·누락 세원 발굴을 위한 내실 있는 자치구 업무 지원 및 점검 추진
- 감면 부동산 사용실태 일제조사 추진 등 사후관리 강화
- 자치구 직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비대면 세무조사 교육 실시(2월, 10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 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 | | 집행률(%) |
|-------------|-------------|-------------|-------------|-------------|--------|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
| 시세 징수교부금 | 510,458,159 | 189,334,434 | 109,021,788 | 212,101,937 | 100 |
| | | 1분기 교부금 집행 | 2분기 교부금 집행 | 3분기 교부금 집행 | |

1-2 새로운 징수기법 발굴을 통한 징수 목표액 달성

가상화폐, 자기앞수표 등 고액체납자의 새로운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문 징수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징수 목표 초과 달성

□ 체납시세 징수실적('21. 8월말 기준)

- '21년 목표 2,010억원 대비 징수실적 1,929억원으로 진도율 96.0% 달성

(단위 : 억원, %)

| 구분 | 목표액(A) | 부과액(B) | 징수액(C) | 진도율(C/A) | 징수율(C/B) |
|----------|--------|--------|--------|----------|----------|
| 2021년 8월 | 2,010 | 6,682 | 1,929 | 96.0 | 28.9 |
| 2020년 8월 | 2,221 | 8,061 | 1,559 | 70.2 | 19.3 |
| 전년동기 대비 | △211 | △1,379 | 370 | 25.8 | 9.6 |

※ '21년 자체 목표 상향조정(2,010억원 → 2,500억원 ↑) 2,500억원 대비 77.2% 달성

□ 추진 내용

- 전국 지자체 최초 가상자산 은닉 고액체납자 689명, 984건 압류 23억원 징수
 - 가상자산 거래소는 주민등록번호를 관리하지 않아 휴대폰번호 조사로 체납자 특정
 - ※ 미추심 결과 조치 : 압류 된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액 재조사 후 추심 진행
- 서울시 최초 수표 교환 체납자 752명, 1,748억원 확인, 220명 33억원 징수
 - 10개 은행 및 새마을금고 75개 지점에 대하여 수표교환 내역 조사
- 호화생활자, 사회저명인사 등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실시
 - 고액체납자 최00 전 회장 가택수색 실시로 현금 징수 및 미술품 등 압류
 - '97년 부도 후 '09년 청산된 '한보철강' 체납세금 617백만원, 23년만에 징수
- 자치구 협업 상습체납차량 6월 특별 단속기간 운영, 51대 견인, 35억원 징수
 - 25개 자치구를 3개팀으로 단속조를 편성하여 자치구 전역에 대한 집중 단속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산액 | |
|------------|---------|---------|--------|-------------|--------|
| | | | | 예산액 | 집행률(%) |
| 고액 체납시세 징수 | 458,620 | 443,392 | 96.7 | 456,476 | 99.5 |

1-3

부동산 공시가격 및 시가표준액 균형성 제고

주택 공시가격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제도의 형평성·공정성을 도모하고, 상업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등 추진

□ 추진 배경

-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는 기준
 - 보유세·건강보험료 부과,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등 60여개 분야 활용
- 공시가격의 시장 적정가격 반영을 통한 형평성 및 공정성 제고
- 공시가격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및 자치구 전문성 지원 등 필요

□ 추진 내용

- 주택 유형별(단독·공동)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분석 등
 - 「주택 공시가격 반영비율 연구」 추진('21. 3월~10월)
 - ▶ '20~'21년 자치구별, 가격구간별 수준 측정 및 분석 등
 - ※ 2021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 연구용역으로 대체
 - 연구결과에 따라 주택가격의 적정성을 한국부동산원에 조정 요청(1~2월)
- 상업용 건축물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한국지방세연구원, '21. 1월~9월)
 - 오피스텔 및 상가 건축물의 수익가격 및 시장가격을 반영한 과포 산정체제로 개편
 - 중앙정부(표준)와 지자체(개별)가 역할분담하여 산정하는 분권형 협력체계 도입
 - ▶ 제도개선안 마련 대정부 건의(12월 예정) ⇒ 지방세관계법령 개정 지속 추진
- 자치구 공시업무 전문성 지원을 위한 기반체계 구축
 - 건축물 현황, 실거래가 등을 연계한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3월~10월)
 - 자치구 주택가격 산정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1월,11월)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상액 | |
|-------------------|---------|---------|--------|-------------|--------|
| | | | | 예상액 | 집행률(%) |
| 부동산 가격공시 지원시스템 구축 | 387,651 | 227,150 | 58.6 | 387,651 | 100 |

1-4

지방세 과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주택가격 급등에 따라 시민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한 바 시민의 재산세(주택) 부담 경감 추진 등 과세제도의 합리화 및 납세자 편의 증진 도모

□ 재산세(주택) 부담 경감 추진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 원 까지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세 부담 경감
 - (서울) 6억~9억원 주택수 38.9만호 혜택 가능(공동 34.6만호, 단독 4.3만호)
 - *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 인하
- 특례세율 적용기준 상향 등 지방세법 개정 건의 및 구청장협의회시 특례세율 적용 확대 공동 건의 제안('21. 4월)
- '21. 6. 29. 「지방세법」 개정안(특례 6억원→9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 ※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하고 3년간 한시적 시행

□ 법인세무조사 관련 市 직접 부과 징수로 전문성 강화 및 납세편의 제고

- 대형법인 등 시 세무조사 후 자치구에 통보하여 시세를 부과·징수함으로 인해 행정소송 등 제기시 과세논리 등 자치구 대응력 부족
- 市 조사 건은 직접 부과·징수하여 전문성 강화 및 납세자 편의 제공
 - 동일 납세자 복수 자치구 과세 → 市 일괄과세 납세자 편의 증대 등

□ 체납고지서 우편발송 대신 모바일 문자서비스 발송으로 개선('21.9월~)

- 거주지 불분명한 체납자도 문자로 체납사실을 수시로 확인토록하여 납부 유도
 - 고지서 장기방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간편 납부로 납세편의 증대
 - 체납고지서 발송 예산 절감(우편발송, 고지서제작 470원 → 전자고지 180원)

□ ETAX 본인 인증수단 확대 및 전자고지 확대

- ETAX 인증수단 확대로 대시민 납부편의 제공('21.2월~)
 - 공인인증 폐지에 따른 금융인증서('21.2월 오픈) 및 민간인증('21.10월 오픈) 도입(삼성, 카카오, 통신사,페이코, KB)
- 토스(가입자 2천만명, 활성 유저 1,386만명)를 통한 앱 고지 추진('21.10월~)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1-5 AI기술을 활용한 지방세 상담서비스 및 효율성 제고

비대면에 기반한 AI기술을 활용 24시간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및 세금 수기 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지방세 서비스 효율성 제고

□ 추진 내용

- 비대면 기반 24시간 챗봇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21.6월~)
 - 세무상담 빅데이터를 활용한 챗봇의 개별 맞춤형 세무상담 지원
 - ETAX 콜센터, 자치구 상담자료로 1만1천개 질문을 챗봇 학습 후 서비스 오픈
 - ETAX(PC, 모바일웹/앱) 검색단어를 활용한 지식 보강으로 답변의 정확도 증대
 - ※ 21.6월 오픈 후 검색단어 학습을 통한 챗봇 지식 보강 중(진행중)
 - ETAX 모바일 웹/앱, 24시간 실시간 운영으로 시민편의 제고
 - 세금 설명, 세금 신고방법 및 납부액 산정, 전자고지 신청방법, 세액공제 등
 - ※ '21. 9월까지, 총 369,014건(일평균 3,900건)의 질문 처리
 - ※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만점에 9점, 답변 성공률 99%
- 세금 수기납부서의 자동데이터화로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비정형 수기납부서¹⁾의 이미지 전환(스캔) 및 데이터화 추진
 - 수기납부서를 이미지 전환(스캔) 후 전산데이터로 변환하여 세입시스템 전송
 - ※ 21.10월부터 22.6월까지 일정으로 구축 추진 중
 - 구축 후 이미지 파일과 전산데이터를 세입시스템에서 즉시 확인·수정
 - (기대효과) 납부 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지방세 납부의 효율성 증대
 - 수기납부서 영수증의 자치구 간 이동 및 수기입력 절차 생략 가능
 - 기존 최고 23일 소요에서 당일 처리로 수납처리기간 획기적 단축
 - ※ '21년(1월~9월) 수기납부서 현황 : 251천 건, 8,846억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1) 신고납부 세목의 세금 납부를 위하여 납세자가 법령 서식을 출력 또는 직접 작성한 신고서에 과세정보를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영수증

2. 시민에게 힘이 되는 공감 재무행정 추진

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2-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지원

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2-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납세자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납세자에 대하여 임대료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지원

- 지원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제31조의2 등
- 지원 내용 : 코로나19 피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에게 임대료 50% 내 감면 및 납부유예 등 지원
- 지원 절차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지원 기준 결정



※ 지원실적('20.2~'21.6) : 지하도상가, 품물시장 등 총 4,249개소, 585억원

- 지원 기간 :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 확산으로 6개월 연장('21.7월~12월)
- ※ 지원규모 : 218억원 예상

□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지방세 지속 지원

- 지원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
- 지원 내용 : 납부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세율인하, 조례에 의한 감면
- 지원 기간 : 코로나19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지속적인 세제지원 추진

(단위: 건, 억원)

| 연도 | 합계 | | 기한연장 | | 징수유예 | | 체납처분 유예 | | 세무조사 유예 | | 세율인하 | | 감면(조례) | |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20 | 416,850 | 6,631 | 416,043 | 6,238 | 530 | 325 | 70 | 38 | 21 | - | 186 | 30 | | |
| '21 | 271,325 | 1,005 | 270,027 | 728 | 277 | 46 | 59 | 1 | 20 | - | | | 942 | 230 |

※ 조례(자치구)에 의한 감면은 고급오락장의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감면 지원에 해당함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2-2 골목상권 회생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소상공인·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세무상담을 추진하여 세무공금증 해소, 절세방안 안내 등을 통해 골목상권의 회생 지원

□ 추진 개요

- 재능기부를 원하는 세무사를 각 자치구 소상공인회 및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상인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추진

□ 추진 내용

- ‘소상공인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지역소상공인회와 연계한 마을세무사 17명 지정·운영 (※ 임기 '21.3.29~'21.12.31)
 - ※ 지역소상공인회 현황 : 강북,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마포,서대문 등 17개소
 - 소상공인회 전담 세무사 운영 홍보 및 소상공인회 세무 상담('21.8월말 35건)
- ‘전통시장 마을세무사’ 운영('21.3월~)
 - 전통시장 전담 마을세무사 25명 지정·운영 (※ 임기 '21.3.29~'21.12.31)
 - ※ 전통시장 현황 :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남대문시장, 용산구 용문시장 등 25개소
 - 전통시장별 전담 마을세무사 운영 홍보 및 세금·절세방안 등 상담('21.8월말 131건)
-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영상 제작·배포('21.9월)
 - 소상공인 및 서울시민이 마을세무사 상담 시 가장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 제작
 - ※ 서울시 유튜브 게시(11월 예정) 및 25개 자치구에 배포(완료)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상액 | |
|----------|--------|-------|--------|-------------|--------|
| | | | | 예상액 | 집행률(%) |
| 마을세무사 운영 | 28,000 | 8,000 | 28% | 28,000 | 100 |

2-3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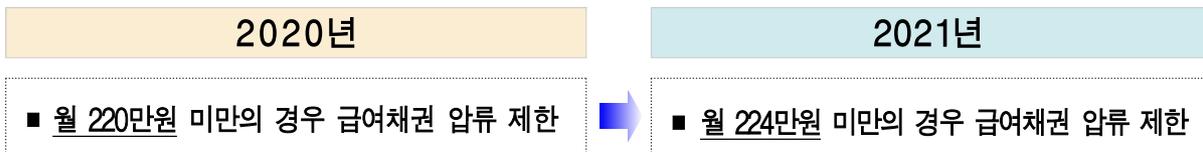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 및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복지제도 연계

□ 추진 배경

- 고액체납자 징수활동 과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폐업, 실직 등으로 인한 체납자 지원 필요

□ 추진 내용

- 뉴딜일자리 등 활용 생계형 서민체납자 적극 발굴을 위한 전문상담사 상담
 - 뉴딜 일자리 사업 참여자 : 2명(3월~12월까지 10개월 근무)
 - 65세 이상의 고령 체납자 6,614명 중에서 생계형 서민체납자 발굴
- 주민센터 방문 지원 및 복지 연계 지원 실적 : 87명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5명 선정, 긴급 지원금 3명, 도시락 지원 2명
 - 생계형 서민체납자 중 77명은 기초생활수급자 심의 절차 진행중
- 생계형 서민체납자의 급여 압류 금액 224만원 상향 조정



※ '21년 서울형 생활임금 : 월 2,236,720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산액 | |
|-----------------------------|--------|--------|--------|-------------|--------|
| | | | | 예산액 | 집행률(%) |
| 서울형 뉴딜일자리 (※ 일자리정책과 재배정) | 60,209 | 38,067 | 63.2 | 60,209 | 100 |

2-4

공공구매 활성화로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지원

소상공인 등 희망기업 제품에 대해 구매목표 제도 추진 및 공공구매 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업체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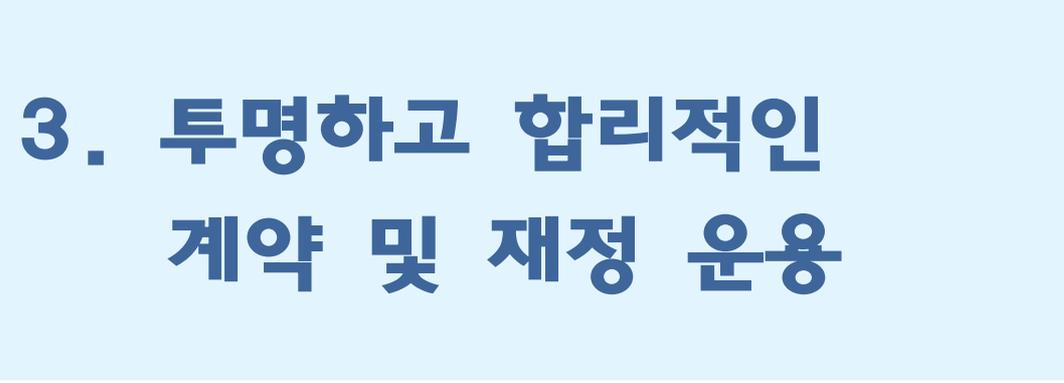
추진 개요

- 기관별 구매목표 설정 및 관리를 통한 희망기업 제품구매 촉진
 - 근거 : 「서울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제2조
 - ※ 희망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사회적기업(사회적·마을·자활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소기업

추진 내용

- '21년 市·區·투자출연기관별 희망구매 목표 설정·관리(2월~)
 - '21년 상반기 구매실적 : 9,639억원(구매목표 1조 5,764억원 대비 61.15% 달성)
 - ※ 市 3,624억원, 區 4,889억원, 투자출연기관 1,126억원
- 기관별 구매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희망기업 판로지원 강화
 - 市 기관 성과평가지표('20년 3%→'21년 4%) 및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1%) 반영 추진
 - 구매실적 우수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 「희망구매 실천상」 시상
 - ※ '20년 실적 평가 후 시·구·투자출연기관 각 2개(최우수·우수) 총 6개 기관 업무담당자 시상
- 소상공인·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市 구매사이트 통합 연계·홍보
 - 「서울계약마당」에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소재 사회적약자 기업 대상 온라인 쇼핑몰* 연계 및 홍보로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
 - * 서울계약마당(<http://contract.seoul.go.kr>) :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계약정보 및 지역 업체 정보 등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사업자, 시민 등이 이용
 - * 공공마켓(소상공인, <http://seoul.s2b.kr>), 함께누리(사회적경제기업, www.hknuri.co.kr), 에이블마켓(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www.ablemarket.or.kr)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1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계약심사로 신속한 발주 지원

사전검토·통합심사로 조기발주를 지원하고, 공통자재 합동조사와 서울형품셈 개발로 적정원가를 산출하는 등 합리적·효율적인 계약심사로 경제활력 제고

□ 추진 내용

○ 계약심사 현황('21.9월말)

- 2,817건(22,441억원)심사, 780억원(3.5%)절감, 처리기간 3.4일
※ '20년 9월말 : 3,003건(24,259억원)심사, 1,165억원(4.8%) 절감, 처리기간 3.5일

○ 사전검토·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제 등으로 신속한 발주지원

- 공사, 용역, 구매 분야별 심사담당자 배정 후 신속심사통보(법정처리기간 10일)
-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시행으로 실질심사기간 단축
 - ▶ 계약심사 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계약심사 요청 前 병행 검토
 - ※ '21년 9월까지 실적 : 총 352건 심사, 보완율 2.2%, 평균처리기간은 2.2일
 - ※ 사전검토제 시행 발주처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결과 93.9% 만족
- 유사사업 '일괄신청 통합심사' 시행으로 심사효율화
 - ※ '21년 일괄신청 통합심사 246건, 평균처리기간 3.0일

○ 공사에 적용되는 공통자재 합동조사를 통한 자재단가 표준화 추진(1월, 7월)

- 시·구별로 달리 적용하던 모래, 골재, 철근 등 공사자재단가를 분야별 시·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대상품목 확정 및 공통단가기준 적용
 - ※ '21년 공통자재 공유현황 : (1월)총 331종 1,345개, (7월)총 290종 1,274개

○ 현장 소통형 서울형품셈 지속 개발로 적정원가 산정 지원

- 노동시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한 할증요인 반영 등으로 원가기준체계 마련
- 건설업계·발주부서·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협업 개발 추진
 - ※ 21년 서울형품셈 신규개발 9건(1건 완료, 8건 진행중), 정비 2건 추진

○ 원가설계 모범 부서 및 사업에 대한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지정

- 매년 반복사업, 조정율이 낮은사업등을 대상으로 한시적(1년간) 계약심사 제외
- '21년 6개부서 116개 사업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3-2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사업 발주단계부터 계약완료단계까지 계약의 전과정을 관리하고 「서울 계약마당」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 추진 내용

-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변호사, 교수, 건설연구원 등 분야별 계약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 '21. 9월말 현재, 계약심의위원회 총 11회 개최, 96건 심의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수의계약 금액 상향 및 계약절차 간소화(~'21.12월)
 - 계약이행에 따른 검사 7일 이내 완료, 대가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완화
- 수의계약 업체 선정 및 사후평가 시스템으로 계약의 투명성 및 사업품질 제고('21.4월~)
 - 발주부서에서 적정 수의계약 업체를 찾기 어려운 경우 「서울계약마당」 수의 계약 공개견적 요청시스템으로 원활한 가격 비교 및 적정 업체 선정 지원
 - ▶ (발주부서)공개견적요청 → (업체)견적서 제출 → (발주부서)견적서 비교검토 → 계약체결
 - 수의계약 수행업체의 사업종료 후 사후 평가결과(과업의 충실성, 이행태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의계약 업체 선정시 정보로 활용
- 「서울계약마당」을 통한 계약정보 제공 및 실적증명 서비스 등 시민편의 제고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으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 서비스 제공 확대(8종→9종)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산액 | |
|---------------|---------|--------|--------|-------------|--------|
| | | | | 예산액 | 집행률(%) |
| 서울계약마당 시스템 운영 | 113,080 | 56,840 | 50 | 109,680 | 97 |
|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 25,957 | 17,750 | 68.4 | 25,957 | 100 |

3-3

효율적인 자금 운용 및 차기 시금고 선정 준비

자금분석, 금리변동 등을 고려한 市 재정의 안정적인 운용·관리능력에 중점을 두고,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시금고 평가기준 마련

□ 시금고 개요

- 운영기간 : '19. 1. 1. ~ '22. 12. 31.(4년)
- 재정규모 : '21년 기준 49.8조원(일반 33조, 특별 13조, 기금 3.8조)
- 금고은행 : 1금고 신한은행(일반·특별회계), 2금고 우리은행(주택사업특별회계기금)

□ 추진 내용

-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저금리)을 고려한 예금 관리 추진('21.1월~)
 - 잔여자금은 공금예금에 예치하되 정기예금 금리 상승시 정기예금으로 전환 예치
 - ※ 이자수입액('21.9.30기준) : 497억원(일반회계 419억원, 특별회계 78억원)
- 부서 협업·소통을 통한 자금 규모 및 지출시기 조정(수시)
 - 일반회계 10억원, 특별회계 5억원 이상의 고액사업 지출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해 자금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출
- 자금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와 지방채 발행시기 협의(수시)
 - 회계간 전용 등 가용자금 先 지출로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 최소화
 - ※ 지방채 발행 계획 2조 5,817억원 중 1조 1,866억원 발행('21.9.30.기준)
- 차기 시금고 선정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 '19.5.9. 개정)을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배점 축소, 금리 및 금고업무 관리능력 배점 확대 등 시금고 조례 개정('21.5월)
 -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예금, 대출 기준금리 등의 시금고 지정 세부평가 내용 마련('21.10~12월)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3-4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0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 개요

- 대상기관 : 43개 기관 284여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6개)
-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첨부서류 등

□ 추진 내용

- 「2020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 작성 및 시장보고 : 3.24.
 - 세입예산 : 49조 5,397억원, 세출예산 : 44조 4,099억원
-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 : 4.13. ~ 5.17.(35일간)
 - 제29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시의원 3명, 회계전문가 등 총10명)
-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27.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301회 정례회) : 6.10. ~ 7. 2.
-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2.~8.31.
 - 주요사업 결산설명서 공개 및 시민의견 수렴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반영
-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점검 및 제도개선 등 사후관리 : 7월~12월
 - 시정권고사항 77건(예산운용20, 세출27, 세입관리9, 업무개선14, 성과 및 기타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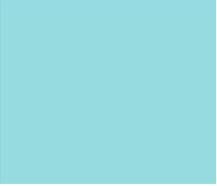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상액 | |
|---------|---------|---------|--------|-------------|--------|
| | | | | 예상액 | 집행률(%) |
| 결산업무 추진 | 168,342 | 147,455 | 87.6 | 150,455 | 89.4 |



4. 시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강화



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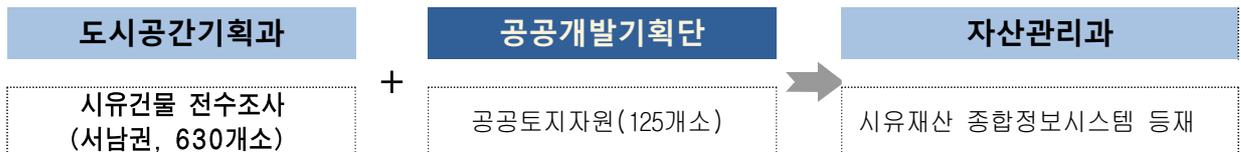
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4-1 시책사업 부지 취득 및 행정수요 적극 대응

우리시 필요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적극 취득하고, 사업부서의 주요재산 취득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함으로써 주요 시책의 성공적 추진 도모

□ 추진 내용

- 행정수요 적극 대응을 위한 시 필요재산 취득
 - 잠실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위해 잠실운동장 내 국유지 교환을 추진하여 우리시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21.7월)
- 원활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시유재산 중 잉여공간 발굴 기반 마련
 - 30년 이상 노후 시유건물 중 최대용적률 미활용 건물 100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21.4~7월)를 실시하여 개발 가능한 5개소 발굴
 - ※ 개발 가능성 검토 등을 위해 공공개발기획단과 협력하여 활용 구상안 마련('22~)
 - 도시공간기획과·공공개발기획단에서 조사한 시유재산 전수조사 결과(630개소) 및 공공토지자원(125개소)을 시유재산정보시스템에 등재('21.12월)



- 주요재산 취득·처분 적정성 도모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관리계획 등 적기 의결
 - 공유재산 취득·처분 등에 대하여 사전적정성 및 사업계획 검토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6회)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원활한 심의 의결을 위해 사업부서-시의회 소통(4회)
 -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이행 사업 예산편성 방지 위해 예산담당관, 각 상임위와 협력(상시)

□ 예산집행 현황 : 비예산

4-2 시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및 적기 매각 추진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 및 매각대상 자산의 적기 매각 등으로 시유재산의 공공성 및 수익성 제고

□ 추진 내용

- 국·공유 재산 소유와 점유 불일치 해소를 위한 재산 교환 추진
 - 국가 사용 시유재산(49개소)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21.4~6월) 실시
 - ▶ 파출소 및 치안센터 등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협소한 건물로 우리시 활용 실익 부족
 - 국·공유 상호점유 재산 교환을 위해 경찰청 협의완료('21.8) 및 기재부 협의중
- 시유지 집단화 사업 추진으로 재산관리 효율화 및 재산가치 제고
 - 주요시설 내 여러 필지로 산재된 시유지를 지적확정측량을 통해 단일 필지로 집단화하여 효율적 재산관리 및 재산가치 제고 도모
 - 지적확정측량, 지적공부 등 등기 조치, 개별공시지가 재조사 결정 의뢰
 - ▶ 21년도 : (완료)은평평화공원(12필자→1필자), 금하로(23필자→1필자), (진행중)서울 숲
- 재산별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매각방안 마련으로 시유재산 적기 매각 추진
 - 청량리제7구역·영천구역 재개발사업 등 10개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지구 내 시유지를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62억원 매각
 - 보존부적합 소규모 부지 중 매각·대부 가능 시유지는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공개매각을 통해 세입증진 도모(4회 공매 3건 낙찰, 9억원)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상액 | |
|--------------|---------|--------|--------|-------------|--------|
| | | | | 예상액 | 집행률(%) |
| 시유지 집단화 사업 등 | 250,000 | 74,087 | 30 | 250,000 | 100 |

4-3 체계적 재산관리를 통한 시 재산가치 증대

체계적 재산 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내실 있는 위탁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정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시유재산 가치 증대 도모

□ 추진 내용

- 재산관리 내실화를 위해 시유재산 전문기관 위탁관리 지속 추진
 - 서울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21.5.~6.)
 - 위탁관리에 따른 매각대금, 대부료 등 수입·지출 정산 및 세입조치

〈 시유재산 위탁관리 개요 〉

- ▶ 수탁기관 : 서울주택도시공사
- ▶ 위탁기간 : '21.7.1.~'24.12.31.(3년6개월)
- ▶ 위탁사무 : 시유재산 관리·처분 사무
- ▶ 위탁재산 : 일반재산 1,106건, 439천㎡

- 「'21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재산현황 조사·관리
 - 전문기관을 활용한 실태조사 용역 추진('21.6월~12월)으로 시유재산의 정확한 측량 조사를 통해 무단점유 등을 확인하여 재산이용 현황별 관리 체계 확립
 - ※ 시유재산 중 도로부지(108건) 정밀 이용실태 조사(76건, 70% 완료, 9월말 기준)
 - 실태조사 완료 후 재산관리관에 통보하여 매각가능재산 매각,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추진
- 변상금 등 재산관련 세외수입 체납금 관리강화
 - 「'21 시유재산 체납정리 계획」 수립·시행('21.4월) 및 분기별 징수실적 점검
 - 압류, 독촉·체납고지 일제발송, 수시 현장방문 및 납부독려 등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
 - 기타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매각 전환(132건), 대부계약 전환(22건) 유도 등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21. 9. 30.기준)

| 사업명 | 예산현액 | 집행액 (원인행위) | 집행률(%) | '21년말 집행예상액 | |
|--------------|---------|---------------|--------|-------------|--------|
| | | | | 예상액 | 집행률(%) |
| 시유재산 정밀 실태조사 | 100,000 | 99,977 | 99.9 | 99,977 | 99.9 |

IV. 세입·세출예산 집행현황

□ 세입현황

(단위: 백만 원, '21. 8. 31. 기준)

| 구 분 | '21년 예산액 | 징수결정액 | 수납액 | 결산전망 | |
|---------|------------|------------|------------|------------|--------|
| | | | | 금액 | 결산율 |
| 계 | 23,744,941 | 21,674,065 | 20,972,092 | 26,295,443 | 110.7% |
| 시 세 | 20,023,706 | 18,015,542 | 17,325,350 | 22,562,693 | 112.7% |
| 세 외 수 입 | 253,930 | 191,218 | 179,437 | 265,445 | 104.5% |
| 보 조 금 | 2,029 | 2,029 | 2,029 | 2,029 | 100.0% |
| 보전수입 등 | 3,465,276 | 3,465,276 | 3,465,276 | 3,465,276 | 100.0% |

□ 세출현황

(단위: 천 원, %, '21. 9. 30 기준)

| 구 분 | '21년 예산액 | 집행현황 | | 결산전망(%) | |
|---------------------------|---------------|---------------|-------|---------------|-------|
| | | 금액 | 집행률 | 금액 | 집행률 |
| 합 계 | 3,129,056,685 | 1,773,300,046 | 56.7 | 3,083,397,461 | 98.5 |
| 재 무 과 | 805,161,102 | 581,111,085 | 72.2 | 759,927,344 | 94.4 |
|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 795,710 | 320,660 | 40.3 | 787,753 | 99.0 |
| 2020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12,580 | 182,879 | 86.0 | 189,196 | 89.0 |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 175,703 | 175,703 | 100.0 | 175,703 | 100.0 |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 334,708 | 204,795 | 61.2 | 286,175 | 85.5 |
|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 25,957 | 17,750 | 68.4 | 25,957 | 100.0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 101,000 | 60,570 | 60.0 | 97,667 | 96.7 |
|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 113,080 | 54,840 | 48.5 | 109,680 | 97.0 |
| 기본경비 | 1,759,756 | 1,164,377 | 66.2 | 1,504,591 | 85.5 |
| 인력운영비(통합편성) | 801,642,608 | 578,929,511 | 72.2 | 756,750,622 | 94.4 |
| 자산관리과 | 8,981,884 | 1,596,175 | 17.8 | 8,828,036 | 98.3 |
|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 7,000,000 | 214,621 | 3.1 | 7,000,000 | 100.0 |
|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 1,816,164 | 1,282,415 | 70.6 | 1,665,870 | 91.7 |
| 시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18,354 | 67,990 | 57.4 | 114,800 | 97.0 |
| 기본경비 | 47,366 | 31,149 | 65.8 | 47,366 | 100.0 |
| 계약심사과 | 112,168 | 58,622 | 52.2 | 97,668 | 87.0 |
| 계약심사 업무추진 | 42,500 | 15,549 | 36.5 | 28,000 | 65.8 |
| 기본경비 | 69,668 | 43,073 | 61.8 | 69,668 | 100.0 |

| 구 분 | '21년 예산액 | 집행현황 | | 결산 전망(%) | |
|-------------------------------|----------------------|--------------------|-------------|----------------------|--------------|
| | | 금액 | 집행률 | 금액 | 집행률 |
| 세 제 과 | 1,786,021,075 | 671,847,478 | 37.6 | 1,785,983,501 | 100.0 |
|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 186,920 | 126,431 | 67.6 | 164,116 | 87.8 |
| 마을세무사 운영 | 28,000 | 8,000 | 28.6 | 28,000 | 100.0 |
|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 1,200 | - | - | - | 0.0 |
|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원 | 1,620,741 | 1,610,691 | 99.4 | 1,620,741 | 100.0 |
| 부동산 가격공시 | 405,651 | 235,796 | 58.1 | 392,081 | 96.7 |
| 기본경비 | 125,260 | 93,645 | 74.8 | 125,260 | 100.0 |
| 재정보전금 | 1,781,630,523 | 667,750,135 | 37.5 | 1,781,630,523 | 100.0 |
|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2,020,215 | 2,020,215 | 100.0 | 2,020,215 | 100.0 |
| 국고보조금 반환 | 2,565 | 2,565 | 100.0 | 2,565 | 100.0 |
| 세 무 과 | 521,517,168 | 513,824,469 | 98.5 | 521,277,818 | 100.0 |
|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 172,474 | 155,214 | 90.0 | 172,474 | 100.0 |
| 지방세고지서 인쇄통합관리 | 850,532 | 675,119 | 79.4 | 808,537 | 95.0 |
|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 182,991 | 76,226 | 41.7 | 176,154 | 96.3 |
|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 192,700 | 68,844 | 35.7 | 192,700 | 100.0 |
| 시 세입증대 자치구 협력 및 지원사업 | - | - | - | - | - |
| 시세 세원발굴 지원 | 100,000 | 44,685 | 44.7 | 93,500 | 93.5 |
| 전자고지 마이리지 지원 | 1,300,530 | 957,206 | 73.6 | 1,300,530 | 100.0 |
|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1,730,770 | 854,495 | 49.4 | 1,708,770 | 98.7 |
|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운영분담금 | 5,000,000 | - | - | 5,000,000 | 100.0 |
| 차세대지방세입정보시스템 통합구축 변화관리 컨설팅 | 503,770 | - | - | 503,770 | 100.0 |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879,732 | 425,386 | 48.4 | 847,700 | 96.4 |
| 기본경비 | 145,510 | 109,135 | 75.0 | 145,510 | 100.0 |
| 시세 징수교부금 | 510,458,159 | 510,458,159 | 100.0 | 510,458,159 | 100.0 |
| 38세금징수과 | 7,263,288 | 4,862,217 | 66.9 | 7,261,144 | 99.9 |
| 고액체납시세 징수 강화 | 458,620 | 443,392 | 96.7 | 456,476 | 99.5 |
|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 1,940,024 | 1,262,799 | 65.1 | 1,940,024 | 100.0 |
| 자동차세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 지원 | 4,787,078 | 3,091,386 | 64.6 | 4,787,078 | 100.0 |
| 기본경비 | 77,566 | 64,640 | 83.3 | 77,566 | 100.0 |

V. 2020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총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4 건
- 조치내역

| 구분 | | 계 | 완료 | 추진중 | 검토중 | 미반영 |
|----|------------|----|----|-----|-----|-----|
| 계 | 계 | 44 | 30 | 14 | - | - |
| | 시정·처리요구사항 | 26 | 14 | 12 | - | - |
| | 건의사항 | 8 | 7 | 1 | - | - |
| | 기타(자료제출 등) | 10 | 9 | 1 | - | - |

시정 · 처리 요구사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p>○ 결산검사 관련 서울시 재정규모가 늘어난 데 비해 결산검사 위원은 늘지 않았는데 재정규모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증원 필요 (재무과)</p> |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 </div> <div style="margin-bottom: 10px;">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 : '20.4.24.(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전국시도의회회의장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의내용: 시도의 경우 10~20명, 시군구의 경우 5~10명 이하로 개정 필요 ○ 행정안전부 검토결과 '일부 수용' 의견 회신 : '20.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토의견: 결산검사위원 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사위원 선정기준 자격요건 등에 대해서도 조례로 규정하도록 시행령상 위임 근거 필요 ○ 결산검사위원 선임관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1.27.(조응천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 회부(1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요지: 결산검사위원이 갖추어야 할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질화 도모 ○ '21.10월 현재 지방자치법 상 결산관련위원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제134조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지방자치법 개정과 별개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개정됨.) -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진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예고 : '21.8.27~10.6 · 법제처 심사 : '21.9.1~10.15 - 개정(안) 내 결산검사 위원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d9e1f2;"> <th style="text-align: center;">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 존</th> <th style="text-align: center;">변 경</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시·도 검사위원수</td> <td style="text-align: center;">5~10인</td> <td style="text-align: center;">7~20인</td> </tr> </tbody> </table> </div> <div style="margin-top: 10px;"> <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div> | 구 분 | 기 존 | 변 경 | 시·도 검사위원수 | 5~10인 | 7~20인 |
| 구 분 | 기 존 | 변 경 | | | | | |
| 시·도 검사위원수 | 5~10인 | 7~20인 | | |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과도한 세수추계의 오차 발생은 서울시의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것으로, 세수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 세입 징수에 대한 재무국의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과도하게 차이가 나는 세목의 경우는 세입예산 편성 시 정확하지 못한 세수추계에 따른 것으로 향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
(세무과)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최근 5년 간 시세 세입은 예산대비 평균 15.1% 초과 징수됨

※ '16~20년 간 시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예산액 | 141,258 | 155,554 | 170,965 | 182,213 | 195,524 |
| 징수액 | 165,693 | 178,171 | 191,033 | 204,580 | 233,930 |
| 결산율 | 117.3% | 114.5% | 111.7% | 112.3% | 119.6% |

○ 추계 오차 발생세목은 취득세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과 동향 등으로 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발생.

○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 '17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며,

※ 자문위원회 개최 (17년) 4회 (18년) 2회 (19년) 1회 (20년) 1회(21년) 2회

-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의뢰

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의뢰('21.1월), 회신('21. 4월)

※ 연구내용: '서울시 취득세수의 예측오차 분석. 부동산 대책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② 서울시립대: 연구과제의뢰('21.2월), 회신('21. 12월 예정)

※ 연구내용: '서울시 지방세 세입 추계오차의 최소화 방안 연구'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립대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사례를 참고하여 세목별·추계 방식별 오차를 검증하고 정확성이 높은 세수 추계 추진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항공기 취득세 부과에 있어서 응익과세의 원칙에 따라 서울시에서 세를 받는 것이 당연하며, 불필요한 지역 간 경쟁이 유발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취득세의 납세지는 항공기 정치장(定置場) 소재지로 항공진흥협회 및 7개 항공사는 등록정치장을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13.5월) ○ 지자체간 무분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행안부에서 탄력세율 적용 관련 전국 시도 회의 개최('14.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배제 17개 시·도 합의 ○ 상기 합의를 바탕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항공기 유치를 위한 타 시·도 탄력세율 적용 사례는 없으나, 정비료 지원 등 재정지원을 통해 지자체간 유치경쟁이 있는 실정이므로 ○ 우리시도 2019년 제정된 김포공항 활성화 지원조례 등을 활용하여 신규항공기 등록시 김포공항을 정치장으로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2019년 98대 중 38대 등록, 약 40%)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의 항공기 탄력세율 적용 여부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조례를 활용한 신규항공기 서울시 등록 유도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외국인 체납 관련 고지서 송달의 어려움이 없도록 모바일 안내가 필요하고, 외국인이 집중해서 모이는 다문화지원센터 등에 안내 등 특별 정리를 두어 일괄 정리 등 방안 검토 필요</p> <p>(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등록 : 서울시 22만 4천명('21.8월말 기준) ○ 외국인 체납자 : 79,175명 - 최근 3년 외국인 세목별 체납시세 현황('21.8월말 기준) (단위 : 건/백만원) <table border="1" data-bbox="603 689 1444 896"> <thead> <tr> <th>구 분</th> <th>2019</th> <th>2020</th> <th>2021.8</th> </tr> </thead> <tbody> <tr> <td>체납액 합계</td> <td>4,733</td> <td>4,194</td> <td>4,380</td> </tr> <tr> <td>지방소득세</td> <td>2,169</td> <td>1,808</td> <td>2,372</td> </tr> <tr> <td>자동차세</td> <td>2,138</td> <td>2,099</td> <td>1,438</td> </tr> <tr> <td>취득세</td> <td>51</td> <td>9</td> <td>19</td> </tr> <tr> <td>주민세 등</td> <td>375</td> <td>278</td> <td>551</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로 번역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발송(영어, 중국어, 일본어, 몽골어, 프랑스어, 독일어) ○ 외국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 재산조회 및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글로벌센터 등 외국인 지원기관 홈페이지에 지방세 납부 안내 팝업창을 게시하여 상시 홍보('21.10월) ○ 외국인근로자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 일괄압류 추진 ○ 특히, 체납당시 한국인이었으나 출국 후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입국한 외국인 신분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임 | 구 분 | 2019 | 2020 | 2021.8 | 체납액 합계 | 4,733 | 4,194 | 4,380 | 지방소득세 | 2,169 | 1,808 | 2,372 | 자동차세 | 2,138 | 2,099 | 1,438 | 취득세 | 51 | 9 | 19 | 주민세 등 | 375 | 278 | 551 |
| 구 분 | 2019 | 2020 | 2021.8 | |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합계 | 4,733 | 4,194 | 4,380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소득세 | 2,169 | 1,808 | 2,372 | | | | | | | | | | | | | | | | | | | | | | |
| 자동차세 | 2,138 | 2,099 | 1,438 | | | | | | | | | | | | | | | | | | | | | | |
| 취득세 | 51 | 9 | 19 | | | | | | | | | | | | | | | | | | | | | | |
| 주민세 등 | 375 | 278 | 551 | | | | | | | | | | | | | | | | | | | | |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세무조사 관련 소송에 밀리지 않도록 단독 세무조사 부서를 신설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원관리팀 신설(조직 확대)를 추진을 위해 조직담당관에 정원 증원요청서 등 제출('21.3.12) ○ 조직담당관 정원 확대(안) 검토 협의(진단 의뢰) : '21.3월 ○ 시세 관련 세무조사 및 자치구 지도점검 업무개선 계획 : '21.4.2 ○ 재무국 세무과 팀 신설 및 인력 조정 계획 : '21.4.8 ○ 시세 직접부과를 위한 시세기본조례 개정의뢰 : '21.4.21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월 시의회 조례개정(안) 상정 : 시세기본조례개정(안) |
| <p>○과세전적부심 인용률이 53.4%에 달하고 있어 과세가 부실하지 않도록 명확한 근거를 확보한 과세와 충분한 교육, 정례적인 사례 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불복절차에서 과다하게 부과 취소되는 불상사를 방지할 대책 마련 필요 (세제과,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전 적부심의 인용률이 높은 이유는 소액건에 대한 심사대상 확대와 과세표준의 경정 등에 따른 일부채택 결정이 다른 구제절차와 비교하여 많기 때문임 ○ 적부심 인용률을 낮추고 명확한 과세를 위해 시 및 자치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추정사례 및 과세기법 공유, 필요시 세무조사 인력 확대를 추진하여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 2021년 세무공무원 개정세법 직무교육 실시 : '21.2월 ○ 2021년 상반기 세무조사공무원 실무사례 교육 실시 : '21.2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하반기 세무조사공무원 실무사례 교육 : '21.10월 ○ 지방세 세목별 자치구 세무공무원 실무교육 실시 : '21년 하반기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태도가 너무 급변하였으며 강동길의원의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음. 상하반기의 보고서가 너무 반대의견을 말하고 있어 재무국의 일관된 방향이 없음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초 과세자주권 침해, 지방분권 역행, 구축·운영 비용의 지자체 전가, 납부시스템 사장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우리 시스템 독자 유지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나, ○ 지방세정 환경의 변화로 우리시에 유리한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었고, 행안부와 차세대 시스템 구축관련으로 지속적인 협의한 바, 우리시 요구조건에 가능한 모두 반영하여 구축할 것을 회신함에 따라 조건부 통합으로 정책방향이 변경되었던 것임 - 시스템구축비용 및 과세자주권, 법(제도), 시스템(기술), 조직 측면 등 다각적 검토 결과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포함 전국통합 차세대 시스템 구축 2단계(2차) 추진 : '21. 8월~'23. 1월 |
| <p>○매년 많은 금액이 결손으로 나오는데 지방세에서 초과세입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의문임. 이렇게 결손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계획 성립시 면밀히 검토바람 (자산관리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까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대금을 재산매각수입에 편성하였으나, 공개매각 유찰('15.8월, '16.12월), 매각방안 변경, 주변 지역 개발에 맞춘 개발 진행 및 공공주택부지 선정 등으로 인한 매각지연으로 세입 결손이 크게 발생한 바 있음 ※ 서울의료원 매각대금 예산 편성 : '16년 5,349억원, '17년 4,376억원, '18년 5,149억원, '19년 4,007억원 ○ 이후,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한 용역』(지역발전본부, '19.4~'21.11.)을 진행함에 따라 '20년부터는 서울의료원 매각대금에 대해 세입예산 미편성하였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매각수입 예산 편성 시, 대규모 도시개발 및 재건축 재개발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 후 적기 매각을 추진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세입 증대를 위하여 보존부적합 사유지에 대해 공개 매각을 추진하고, 매각 가능한 유휴지 목록을 상시 공개하여 적극 매각을 추진하겠음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2019년 언론에 보도하고 2020년다시 중구로 옮기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손 발생이 예상되는데, 분납금 및 위약금과 해당 부지에 대해 부서와 협의해서 대책 마련하길 바람. 서울시 재산에 대해서 명확히 관리해 주기 바람 (자산관리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동 부지 계약해지 귀책 및 매매대금 반환 관련 내·외부 법률자문(2회) : '20. 8월,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5차 분납금 중 3차 분납금까지 총 460억원 납부완료 ○ 복지부 4회차 분납금 부과 유예요청에 따른 부과유예(3회) : '20. 11월, 12월, 합의각서 체결시까지 ○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 실행위원회 및 현안회의 개최(7회) : '20. 8 ~ '21.3월 ○ 서울시-복지부간 합의각서(MOA) 체결(보건의료정책과) : '21. 4.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지동 매각대금 반환, 기존 체결 양해각서 해제 관련사항 등 포함 ○ 공유재산 매각대금 반환금 '22년 예산(안) 제출 : 15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환금 460억원 중 1차 반환금 : 154억원 (3년간 분할, 분납이자 포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 12. 1.까지 잔액 연차별 분할 납부 |
| <p>○리스차량 등록시 서울시는 공채 매입률이 높아 서울시가 아닌 인천이나 다른 지자체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사용은 서울에서 하지만 등록은 인천에서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그만큼 빠져나가고 있음. 서울시의 리스차량 공채 매입률을 인하할 필요성이 있으며 해당 규칙개정 촉구 필요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 매입면제 추진(3% →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안 발의: '17.7월(김용석의원) - 시의회 교통위원회 미상정: '17.9월~ ○ 도시철도공채 조례 소관부서(도시교통실 등)와 공채매입을 조정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월,10월 공채매입을 인하 요청(세제과→도시철도과) ○ '20.2월 공채매입을 인하 관련 부서회의(예산,재정,도시철도) ⇒ 예산·재정담당관 신중 검토의견(즉시 시행 불가) ○ '20.10월 지방세법 상 납세지 규정 개정 건의(세제과→행안부)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철도공채조례 공채 매입을 조정 검토·협의 지속 ○ 행안부에 지방세법상 납세지 규정 개정 지속건의(소유자 주소지 → 이용자 주소지)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19년 5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도 개정되고 있지 않고 있어 재무국의 방만한 행정 운영을 지적하고 즉각 시정 조치 바람 (재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금고기준 반영 등 금고지정 평가기준 논의 ○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 '21.2월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1.5월 |
| <p>○ 2016년 9월 13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년동안 부서에서 개정하지 않고 있어 즉각 조치하길 바람 (재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광석 의원 대표발의로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개정 ('20.12.31.시행) 〈 주요 개정사항 〉 -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 -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의 상한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례의 상한금액 삭제 ※ 적용내용 : 주민생활과 관련 있는 3천만원 이상 공사 공원 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등에 주민참여감독제 의무시행 ○ 법령·조례 개정내용을 부서에 안내('21.1월)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가 몇 년째 맞지 않고 해마다 초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개선책을 적극 강구하길 바람
(세무과)

추진상황 : 추진중

추진내용

○ 최근 5년 간 시세 세입은 예산대비 평균 15.1% 초과 징수됨

※ '16~20년 간 시세 세입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예산액 | 141,258 | 155,554 | 170,965 | 182,213 | 195,524 |
| 징수액 | 165,693 | 178,171 | 191,033 | 204,580 | 233,930 |
| 결산율 | 117.3% | 114.5% | 111.7% | 112.3% | 119.6% |

○ 추계 오차 발생세목은 취득세 등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요인과 동향 등으로 예측과 실적에 차이가 발생.

○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 '17년부터 「부동산 취득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기관, 학계,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의견을 기초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있으며,

※ 자문위원회 개최 ('17년) 4회 ('18년) 2회 ('19년) 1회 ('20년) 1회('21년) 2회

- 세입추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연구과제 의뢰

①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의뢰('21.1월), 회신('21. 4월)

※ 연구내용: '서울시 취득세수의 예측오차 분석. 부동산 대책간의 영향을 중심으로'

② 서울시립대: 연구과제 의뢰('21.2월), 회신('21. 12월 예정)

※ 연구내용: '서울시 지방세 세입 추계오차의 최소화 방안 연구'

향후계획

○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립대 연구결과를 비롯하여 정부 및 타 지자체 등 사례를 참고하여 세목별·추계 방식별 오차를 검증하고 정확성이 높은 세수 추계 추진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지방세 환급 관련 착오과세, 불복 청구 관련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할 것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 환급의 대부분은 법인정산(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으로 인해 발생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득세 중과 등 특수사례가 많아 불복청구에 따른 환급액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소송 등 불복 청구 시 시·구간 공동수행과 보조참가를 확대하는 등 승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과세전적부심 제도를 적극 확대하여 세금고지 전 세금부과의 적정성 검토를 통한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심여를 기울이고 있음 ○ 과오납 발생 최소화를 위해 자치구 세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물론 과세규정의 명확화 등 분쟁 감축을 강구 중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규정 명확화를 위해 지방세연구원을 통한 연구 및 개정건의 - 정확한 과세를 위해 적용 매뉴얼 제작 배포 및 직무교육 강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p>○지방세 고액체납 관련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촉구할 것 (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출국금지는 '20.6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5천만원→3천만원으로 하향 조정되어 시행 중 ○ 재산 해외도피 등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출국을 적극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자치구가 협력하여 시세 및 구세 합산금액 3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출국조치 <p style="text-align: center;">《 최근 5년간 출국금지 실적 》</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 건, 억원)</p> <table border="1" data-bbox="603 1798 1455 1980"> <thead> <tr> <th>구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금지건수</td> <td>669</td> <td>512</td> <td>424</td> <td>556</td> <td>853</td> </tr> <tr> <td>체납액</td> <td>3,223</td> <td>2,500</td> <td>2,620</td> <td>2,771</td> <td>1,088</td> </tr> <tr> <td>징수액</td> <td>36</td> <td>21</td> <td>11</td> <td>21</td> <td>9</td> </tr> </tbody> </table>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금지건수 | 669 | 512 | 424 | 556 | 853 | 체납액 | 3,223 | 2,500 | 2,620 | 2,771 | 1,088 | 징수액 | 36 | 21 | 11 | 21 | 9 |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금지건수 | 669 | 512 | 424 | 556 | 853 | | | | | | | | | | | | | | | | | | | | |
| 체납액 | 3,223 | 2,500 | 2,620 | 2,771 | 1,088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액 | 36 | 21 | 11 | 21 | 9 | | | | | | | | | | | | | | | | | | |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세입증대를 위한 인센티브 사업이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자치구별 큰 격차 없이 지급되어 인센티브라는 취지가 무색함. 세입증대 유인책으로써 인센티브 방식이 아닌 보다 효과적인 다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방역인력의 효율적 운영 등을 고려, 재무국 소관 인센티브 사업은 잠정 폐지됨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 시·구 인센티브 사업 재정립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가 완료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시·구 세무공무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개선대책 강구 |
| <p>○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비율 인하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타지자체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관철하기 바람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이사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율 인하 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안부 지방세정책관 면담 협의('20.01.) - 행안부(지방세정책과) 방문 협의('20.01.) - 17개 시·도 세정과장 회의, 연구원 개선방안 논의('20.01.)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면담, 협조 요청('20.02.) -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 출연율 인하계획 언급('20.5. 전국세정과장회의) ○ '20. 9월 지방세기본법시행령 개정(행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율 인하 : 0.015% → 0.012% ('21년은 0.013% 적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세정과장회의 등을 통해 전국 지자체와 공조, 출연기준의 합리적 인하 조정 지속적 건의(0.012% → 0.01%)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기타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와 지속적인 건의로 개선을 추진하기 바람.</p> <p>(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지원담당관에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인구분 법률자문(‘18.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에서 법인을 민법법인과 그외 법령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구분, 민법법인은 사단·재단법인 표시토록하나 특수법인은 사단·재단법인 등기 불가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재단법인으로 변경 요구(‘19.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에서 현행 법인형식 유지 적절함으로 회신(‘19.4월) ○ 특수법인이 근거법령 상의 준용규정을 통해 일부 민법을 적용받더라도 민법법인으로 할 수 없음(대법원 질의회신, ‘19.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원 재단법인 등기 위해선 설립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 151조에 재단법인 조항 필요 ○ 행정안전부 면담, 운영개선 협조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정책과장 면담 (‘19. 5월, 7월) - 지방세정책관(국장) 면담 (‘19.9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연구원 선임이사에 서울 경기지역은 상임이사로 협의를 추진하고, 지방세연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
| <p>○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중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보통세로 전환되어 출연금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환수까지 될 수 있도록 개선 추진하기 바람</p> <p>(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산정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외하도록 행안부에 법령개정 건의(‘20. 8월, 12월) ○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21.3월)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금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지속적으로 행안부와 협의 및 건의 추진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 재산세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며, 탄력세율을 적용할 때 자치구의 권한을 최대한 인정해야 하지 않는지? 재산세 관련하여 어디까지 자치구의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움. 명확한 기준을 명시해주시기 바람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는 자치구세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법의 범위 안에서 자치구에서 재산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또한, 재산세는 자치구가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정권의 핵심요소이며, 그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여부는 전적으로 자치구에 속한 권한에 해당함 ○ 다만,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의 위임범위인 세율의 가감이 아닌 새로운 과표 구간 신설은 위법한 사항이며, ○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해 등'의 경우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나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의 증가는 탄력세율 적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재산세가 자치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세원이라면 서울시가 좀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야 함. 서울시 재무국의 세수입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부담도 생각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주기 바람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조례로 특정연도의 재산세 세율을 가감(탄력세율)하는 경우 이후연도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지속적 세수 결손과 타 자치구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 상한 : 3억이하 5%, 3억초과~6억이하 10%, 6억초과 30% ○ 또한, 조례에 의한 한시적 세율 인하 시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조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1.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구간별 22.2% ~ 50%인하 ○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 재산세가 자치권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함.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조례 3조에 따르면 “시세의 부과·징수를 해당 과세 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 조항의 의미도 지방세인 재산세 징수가 자치권임을 의미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음. 2016년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44조 특별시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 중 “세율 및 납기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 소재하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된 부분을 삭제하였음. 지방세법 제111조3항에서 부여한 자치구의 탄력세율 조정 권한 같은 경우, 특별시분이 아니라 자치구분에 관한 탄력세율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됨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조례로 특정연도의 재산세 세율을 가감(탄력세율)하는 경우 이후연도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지속적 세수 결손과 타 자치구와의 세부담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담 상한 : 3억이하 5%, 3억초과~6억이하 10%, 6억초과 30% ○ 또한, 조례에 의한 한시적 세율 인하 시 특정지역의 일부 주민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조세 왜곡이 발생할 수 있어,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 이와 관련,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음(한국지방세연구원, ‘20.11월) ○ 시민들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21.1.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인하되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표구간별 22.2% ~ 50%인하 ○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까지 확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p>○외국인 부동산 매수 정부가 파악 못하고 있음.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외국인 체납액에 재산세가 포함 된 것인지? 부동산을 매입 후 해외 거주자들에게 어떻게 재산세가 징수되는지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재산세 납부현황 등) (세무과, 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재산세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부 외국인 등록대장 자료 현행화로 정확한 송달주소를 확인하여 외국어로 번역한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배포 및 납기내 징수를 독려하고 있으며, - 해외 거주 납세자는 납세관리인 신고 및 지정자 등에 부과·고지하여 징수함(전자고지 포함) ○ 외국인 등 납세자가 재산세를 체납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를 포함한 모든 세목을 체납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 비자연장 전 체납세금 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체납 징수하고 있음 - 특히, 외국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 재산조회 및 압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처분 활동중임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보험 및 출국만기보험 등 외국인이 가입한 보험 및 사용자가 의무 가입한 보험을 일괄압류 추진 ○ 특히, 체납당시 한국인이었으나 출국 후 외국인 신분으로 다시 입국한 외국인 신분의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임 |
| <p>○자치구가 세무종합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바람.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종합시스템은 지방세 4법을 근거로 지방세 부과·징수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매년 법 개정 시마다 개정사항을 적시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음 ○ 재산세 탄력세율 관련사항도 현행 법에 근거하여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 ○ 법 개정사항 외에도 자치구 요구사항을 수렴(년1회 정기 및 수시)하여 시스템 반영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이용 편리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하여 사용자가 편리한 시스템 개발 추진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지방세 부과 징수율이 전국17개 시도중 13위. 매년 1조원을 웃도는 체납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징수액은 매년 2천억원 내외로큰 차이가 없는데, 체납이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세무공무원의 안정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결손처분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p> <p>(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액 감소 주요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년도)징수율 지속적 상승으로 신규 체납액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54억원('16년) → 2,641억원('17년) → 2,582억원('18년) → 2,539억원('19년) → 2,571억원('20년) - (지난년도)체납징수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감소 (단위 : 억원) <table border="1" data-bbox="638 772 1444 929">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2016년</th> <th>2017년</th> <th>2018년</th> <th>2019년</th> <th>2020년</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지 난 년 도</td> <td>합 계</td> <td>4,722</td> <td>4,674</td> <td>5,841</td> <td>5,405</td> <td>4,299</td> </tr> <tr> <td>징수액</td> <td>2,374</td> <td>2,094</td> <td>2,003</td> <td>2,263</td> <td>1,846</td> </tr> <tr> <td>결손액</td> <td>2,348</td> <td>2,580</td> <td>3,838</td> <td>3,142</td> <td>2,453</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가상자산, 영치금 등 신규 징수기법을 활용한 징수 및 홍보활동을 통해 체납징수 실적 대폭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8월말 기준 1,929억원 징수(전년동기대비 370억 증가) ○ 결손처분액이 크게 늘어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익없는 부동산·자동차 체납처분 중지 후 결손처분 조치 - 장기 소액채권(185만원 미만) 압류해제 후 결손처분 ○ 결손처분의 적정성 제고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의 경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칭)의 운영 추진 - 결손처분 체납자에 대한 징수사례 연구를 강화하여 결손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내부 검토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가칭)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령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위원회 설치 추진 계획 | 구 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지 난 년 도 | 합 계 | 4,722 | 4,674 | 5,841 | 5,405 | 4,299 | 징수액 | 2,374 | 2,094 | 2,003 | 2,263 | 1,846 | 결손액 | 2,348 | 2,580 | 3,838 | 3,142 | 2,453 |
| 구 분 |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 | | | | | | | | | | | | | | | | | |
| 지 난 년 도 | 합 계 | 4,722 | 4,674 | 5,841 | 5,405 | 4,299 | | | | | | | | | | | | | | | | | | | | | |
| | 징수액 | 2,374 | 2,094 | 2,003 | 2,263 | 1,846 | | | | | | | | | | | | | | | | | | | | | |
| | 결손액 | 2,348 | 2,580 | 3,838 | 3,142 | 2,453 | | | | | | | | | | | | | | | | | | | | |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법에서 정한 의안 제출기한과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제출기한이 상이하여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차이 발생. 의안의 제출시기를 앞당겨 의회에 제출토록 함으로써 의안의 제출시기의 법적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의 의회 회의규칙 제출기한 준수 필요. 재무국의 지속적인 안전 지연 제출 형태는 의회 의결권을 무시하는 것이며, 의원을 거수기로 보는 시각이 내재된 것으로 보여짐. 사전절차인 중앙투자심사 일정 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적기 안전 제출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

추진상황 : 추진완료

추진내용

-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협의결과 중앙투자심사 일정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명문화되어 전국에 공포된 사항으로 조정은 어려움
 - 마지막 중앙투자심사는 10.25.까지 개최, 이를 위해 광역지자체는 8.10.까지 의뢰서를 수합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일정을 더 앞당기는 것은 어려움
-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준수 목적으로 상위법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할 수는 없음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 받음

※ [참고] 중앙투자심사 일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

| 구분 | 사업부서 → 재정균형발전 담당관 | 시군구 → 시도 | 중앙투자심사 의뢰 | 중앙투자심사 완료 |
|-----|----------------------------|----------------|--------------|--------------|
| 제1차 | ‘20.11.30. | ’20.12.15. | 1.1. | 2.28. |
| 제2차 | 3.2. | 3.15. | 3.31. | 5.31. |
| 제3차 | 5.14. | 5.31. | 6.15. | 8.15. |
| 제4차 | 7.26. | 8.10. | 8.25. | 10.25. |

향후계획

- 중앙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1~3차에 심사를 미리 받도록 독려하여, 시의회 회의규칙상 의안제출 기일을 준수하여 제출하겠음
- 다만, 긴급을 요하는 피치못할 사업의 경우에 한하여 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4차 중앙투자심사를 거친 후 해당사업만 추가로 별도 제출함으로써 시의회 회의규칙을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 또한, 이 경우에도 전문위원실에 사업설명서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 심도있게 사업이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음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의사항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및 연대를 통하여 재정자주권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제안과 노력이 필요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추진(안)에 대한 서울시 대응방향 및 타 지자체 공동대응 협력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대·서울연구원·지방세연구원 등을 통해 지방세 이양 논리 보강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시도협-시군구협 공동대응 ○ 국세·지방세 비율 7:3 개선을 위한 국세 추가 지방 이양 입법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득세율(10%→30%), 또는 지방소비세(21%→41%), 양도소득세, 담배분 개별소비세 이양 등 제시 ○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재무국·기조실 공동 재정분권 TF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분권 동향 및 대응논리 개발, 학술용역·정책토론회 등 개최 ○ 2단계 재정분권 관련 지방정부 공동 대응을 위한 추진방향 등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타 시·도 동향 파악,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중심의 시·도 공동대응 강화 <p>○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확정안 발표('21.8.)</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소비세율 4.3%p 단계적 인상('22년 2.7%p, '23년 1.6%p) 21% → 25.3% 국세-지방세 : '20년 기준 73.7 대 26.3에서 '23년 72.6 대 27.4%으로 1.1%p 개선 - 지역소멸대응기금 도입 : 매년 1조원(10년 한시 운영) · 낙후지역 집중 배분 -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사업 부담 완화 : 국고 보조율 상향 · 사업 추가발굴 등 </div>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음.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유착 및 비리가 없도록 하면서 서울시의 소상공인, 지역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자원이 서울시에 유입되고 순환되도록 하는 연구 필요 (재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업체정보 제공 및 홍보로 지역업체 판로개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계약정보통합시스템 '서울계약마당'에 서울시 자치구별 업체 정보를 공개하여 공공기관 구매 독려 - 공공시장 진입 경험이 적은 신생·소규모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 대상 실무 교육 실시('18년 1회, '19년 2회, '20년 2회) ○ 경쟁계약시 지역업체 낙찰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가산점 신설('19.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기반 사업 추진시 해당 자치구 소재 업체 가점(2점) 신설 - 자치구 소재 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입찰시 가점(2점) 신설 ○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전 실·국·본부·기관별 계약횟수(연 4회)를 시 전체 연 9회까지 수의계약 체결 한도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해 용역·물품의 수의계약 가능 계약범위를 추정가격 1천5백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였음('20.6월) ○ 수의계약 업체 선정과정 개선 추진('21.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등 영세업체의 공공조달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수의계약 공개견적 시스템 구축 - 우수업체 수주를 위한 계약업체 평가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공공계약 품질·서비스 제고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레저용 선박 취득세 부과 및 현황 파악이 필요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용 선박 취득세 과세자료 확보 및 조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저용 선박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의 주소지 구청에 등록신청하는 것으로 - 취득세 적정 신고·납부 여부 조사 진행 : '21.2~6월 (조사 결과 적정 과세 확인 및 향후 지도점검 강화) |
| <p>○ 서울시 세입시스템과 행안부 지방세입시스템에 대한 재무국의 검토가 필요함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지방세입시스템과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간 차이점 분석(갭분석) 등 세부검토를 통해 서울시 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한 설계·구축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세대 시스템에 대한 비교·검토 실시: '21. 상반기 ○ 차세대 시스템 구축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서울시 요구사항을 적극 의견 개진하는 등 통합 구축사업에 참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시스템 추가 구축을 위한 제반 사무 전반(위탁 협약조건, 업무수행계획서,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등)에 행안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적극 협업 추진 - 서울시 통합을 위한 위·수탁 협약 체결: '21. 8. 30.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사유지 무단 점거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퇴거 요청보다는 회유책(설득)을 통해서 갈등없이 점거 퇴거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하길 바람 (자산관리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재산 무단점유는 저소득층의 주거용 무허가건물 점유가 대부분이며 주기적으로 변상금 부과, 체납독촉,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재산자가 많아 재산압류의 어려움이 있음 ○ 무단점유로 인한 민원 발생시 현장 방문하여 상담 및 자진퇴거 유도 등 민원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및 대부·매매계약 체결 안내 예정이며, ○ 저소득층 무단점유자에게 맞춤형급여 신청 및 관할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입주 안내 등 점유자의 자진퇴거를 설득하여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겠음 -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무단점유자의 경우 관할 사회복지사와 연계하여 임대주택 안내,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 등 - 주거 외 상업용 등으로 무단 점유하는 경우 대부계약 전환 또는 매수 안내 등 |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 예산 집행액 중 운영비 등 고정지출 비용의 규모가 큼. 운영비 등 예산 사용에 중복,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고정지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연구하기 바람
(재무과)

추진상황 : 추진완료

추진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고정지출 항목은 정부간이전비, 운영비, 인건비 임
- 2020년도 고정지출비 현황

(총계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 세출액 (a) | 고정지출 비용(규모) | | | |
|----|------------|----------------|---------------|------------|------------|
| | | 계 (b=c+d+e) | 정부간이전비 (c) | 운영비 (d) | 인건비 (e) |
| 금액 | 47조 623억 | 32조 2,833 | 23조 1,219 | 7조 1,158 | 2조 456 |
| 비율 | 100% | 68.6% | 49.1% | 15.1% | 4.4% |
| 비고 | | b/a*100 | c/a*100 | d/a*100 | e/a*100 |

- 정부간이전비 : 시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 운영비 : 위탁대행사업비, 시설장비유지비, 자치구징수교부금 등
- 인건비 : 공무원급여, 공무원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 고정지출 비용의 대부분은 시도비보조금 등 정부간이전비 (49.1%)가 차지하며, 운영비 및 인건비 순임. 따라서 고정지출비 감소를 위해서는 정부간이전비 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나, 대부분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매칭사업 및 법정경비가 차지하고 있어 절감노력에 한계가 있음

○ 다만, 서울시는 고정지출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 예산편성 시 인력운영비·기준경비 등에 대해 한도액 및 기준 단가를 설정하여 범위 내 편성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정보화·학술용역사업 사전심사, 출자출연동의, 행사 및 민간경상 등 지방보조사업심의 등의 사전절차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음
- 이와 더불어 예산 집행 시에는 계약심사 및 일반지출 회계심사를 통해 회계의 일반원칙 및 회계관계 규정 준수여부 등을 검토하고 예산집행의 중복·낭비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며,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실시하여 부서지출 일상경비의 낭비를 방지하고, 편성예산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음.

| 건의사항 | 조치결과 |
|---|---|
| <p>○ 탈석탄 시금고 지정지표 반영 확대추세에 따라 서울시도 지표 개정에 대해 가급적 시간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기 바람 (재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금고 지정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1.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위기 대응 지표 등 금고지정 평가기준 논의 ○ 금고지정 평가기준 개정안 마련 : '21.2월 ○ 「서울특별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 '21.5월 |
| <p>○ 전략적 자산취득 관련해서 국유지와 사유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중앙정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 검토하기 바람 (자산관리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현황 파악을 위해 일제조사 추진 : ~'21.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점유 사유재산 : 29필지(49동), 529억원 - 시 점유 국유재산 : 63필지, 905억원 ○ 국가 무상사용 사유재산 해소를 위해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협의 : '21.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기재부, 경찰청 등) 교환 협의(4회)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대상지 확정 및 교환 계약 체결 : '21.하반기 ~ '22년 |

기 타 사 항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 조 치 결 과 |
|--|--|
| ○ 최근 3년 시세 세입 추계(안) (세무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 |
| ○ 부동산자문회의 회의록 (세무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2.) |
| ○ 시금고 시스템 관련 행안부 통 합결정에 따른 시금고의 약정 변경계획 및 매몰비용 대책 (세무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재 시스템을 약정기간 만료일 이후인 '23.1.25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 행안부 및 시금고 등과 적극 협의를 통해 매몰비용 최소화 추진 |
| ○ 금고 약정 및 이행계획, 점검 및 조치사항 내역, 향후계획 (재무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
| ○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세 율 인하 관련 우리시 자치구 재산세 세입 증감분석 (세제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 |
| ○ 서울시 지방세 세수추계 산식 근거 자료 (세무과) | <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 <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19. 11. 6.) |

|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 조 치 결 과 |
|---|--|
| <p>○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 관련 (최근3년간 자동차번호판 영치 자치구별 세부 현황, 차량업무 지원 인력 근무평가 자료, 대 행 사업비 정산서, 영치인력 시작부터 현재까지 수당포함 입금지급 세부현황) (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9.)</p> |
| <p>○ 지방세 과오납 관련(최근3년간 백만원이상 환급받은 환급자 및 법인 세부내역, 2018~2019년 불복청구 세 부현황, 2019년 착오납부 세 부현황, 2020년 이중납부 세 부현황, 2회이상 환급금을 받 은 적이 있는 개인 및 법인 현황) (세무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p> |
| <p>○ 최근5년 결손 처리 후 징수결 정 금액 현황 (38세금징수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19.)</p> |
| <p>○ 서초구 재산세 감면 관련 - 서울시의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에 대한 대 법원 제소 소장 사본(사본 제 출 불가 시, 제소 주요내용 제 출 가능) -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 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법률자 문결과 내용 일체 (세제과)</p> |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완료</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p> <p>○ 자료 제출 완료 (2020. 11. 6.)</p> |